

##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

제3조(인정기준)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1.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: 참가기간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: 행사기간
3.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: 3일 이내
4.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

| 구분 |                   | 기간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결혼 | 본인                | 7일        |
| 출산 | 본인                | 수업일수의 1/3 |
|    | 배우자               | 10일       |
| 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       |
|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 | 5일        |
|   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| 5일        |
|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| 5일        |

<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>

※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.

- ~~5. 교육실습(교직)에 참여할 때 : 교육실습기간(학부생)~~
- ~~6.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: 야외실습기간(학부생)~~
- ~~7. 국내·외 각종 행사 및 대만자원봉사(근로, 의료 등) 참여자 : 학기 중 10일 이내 (학부생)~~
8.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: 수업일수의 1/2
- ~~9.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: 해당 기간(학부생)~~
10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: 수업일수의 1/3
11.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: 해당 기간

② 출석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호에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